

### 3. 안 건

#### 제1호안. 종종부동산 매각 안

하기와 같이 종종부동산의 매각범위를 확정하고 최소매매기준가 금액 이상중, 공개입찰방식을 통해서 최고가 제시자에게 매각을 진행하기로 하며, 필지별 전체면적 매도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분할매도도 진행한다.

No.	지 번	면적(평)	최소 매매기준가 (만원/평)	비 고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산34-1	1,010	150	
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산34-4	42,251	150	가족묘원, 승모당 필지를 포함
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산41-2	272	150	
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181	1,821	250	지상물 존재
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182	586	250	경작중
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888-1	889	120	지상물 존재
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470	535	300	지상물 존재
8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산81	1,080	100	

공개입찰을 통해 제시된 최고가에 대하여, 종원이 매입을 원할경우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도 있다.

고매동 산 34-4 번지 (지번내 별도 필지로 있는 고매동 산 34-3 '가족묘원', 고매동 191-1 묘 '승모당' 을 포함)에 대한 매매는 '분묘기지권' 등을 고려하여, 개인묘소, 가족묘원, 승모당등의 이장이 완료된 후 이를 포함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다수 분묘가 이장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잔여 미이장분묘(직계손의 분묘이장 미협조 원인)가 존재할 경우,

매수처가 이장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매수계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장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도 계약을 진행 할 수 있다.

고매동 888-1 번지에 대해서는 장기거주상황(약 60년) 및 제 사정등을 고려해 종친에 대한 배려 측면에서 매수희망자가 거주자와 사전에 협의를 완료한 후, 매매계약 등을 진행한다.

총회는 종중보유부동산의 관리, 처분, 매각협상(임차인(해지, 변경, 퇴거 등), 매수희망처, 중개업체, 행정기관 등), 지상물(지장물 등)의 처리, 세금 등 관련된 일체의 업무진행을 '원/형/이/정' 각계를 대표하는 임원진으로 구성된 '종중이사회(회장 홍범석)'에 위임한다.  
이후 안건의 '종중이사회 (회장 홍범석)'를 '종중이사회'라 칭한다.

## 제2호안. 매각대금의 분배 및 분배율 안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최종 고매동 산 34-4 번지의 매각과 관련된 업무가 종결(제세공과금 납부, 비용정산 및 종중사업등의 진행 외)후, 잔액중에서 20억원의 종중예비비를 제외한 전액을 종원에게 현금분배 하며, 분배와 관련한 제세금(증여세 등)은 수증자가 직접 납부한다.

총회는 매각대금의 분배 및 분배율에 관한 일체의 업무진행을 '원/형/이/정' 각계를 대표하는 임원진으로 구성된 '종중이사회'에 위임한다.

## 제3호안. 분묘이장 대체지조성 및 이장진행 안

분묘(납골포함)이장을 위한 대체지(자연장지 등) 조성을 진행 하고, 대체지 조성을 완료 후 이장을 진행한다.

조성된 대체지에 대해서는 종중이 직접 관리(벌초, 제초 등)를 진행한다.

종중이 정하는 분묘이장 기한은 대체지 조성후 익년 한식일 까지로 하며, 기한내 이장진행시 종중이 비용을 부담해 진행하고, 기한 이후에 이장을 희망하는 분묘에 대해서는 직계손이 비용을 개별부담해 진행한다.

종중이 조성한 대체지 외에 타지로 이장을 희망하는 분묘에 대해서는 직계손에게 1기당(내외분 도합 1기로 계산) 1천만원을 이장경비로 지급하고, 이장은 직계손이 직접 개별진행 하기로 하며, 개별이장 완료 후 이장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종중이 조성한 대체이장지로 안장할 수 없다.

총회는 분묘이장 대체지 조성 및 이장진행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진행을 '원/형/이/정' 각계를 대표하는 임원진으로 구성된 '종중이사회'에 위임한다.

## 제4호안. 제실건립 안

총회의 목적인 선조송모의 정신을 기리고, 예를다하는 향사 진행을 위해서 남양홍씨 예사공파 구례공종중의 제실을 건립하기로 한다.

총회는 제실건립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진행을 '원/형/이/정' 각계를 대표하는 임원진으로 구성된 '종중이사회'에 위임한다.

## 제5호안. 토지사용 승락서 안

총회는 2021. 4. 25. 종중이사회가 승인한 '고매동 181번지 일부토지사용승락(도로연결용)'에 대하여, 현 임차인과 협의후 요청서에 기재된 범위 및 조건에 따라 '토지사용 승락서'를 발급할 것을 추진한다. (실제 측량에 따라 일부면적은 변경가능)

총회는 토지사용 승락서 발급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진행을 '원/형/이/정' 각계를 대표하는 임원진으로 구성된 '종중이사회'에 위임한다.

## 제 6 호안. 종친들간 불신조장 및 화목저해 행위에 대한 처벌 안.

종원이 '개인' 또는 '종중회'를 사칭하여 원/형/이/정' 각계를 대표하는 임원진으로 구성된 각급 종중회에서 진행 및 결의된 내용과는 전혀다른 허위사실(거짓)을 적시하여 우편물제작, SNS(Social Network Service), 전화 등을 통하여 다수의 구례공 종친들을 상대로 배포하거나 거짓소문을 내어, 이를 오인한 구례공종친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거나 집안간 화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종중규약에 따른 자체 징계는 물론, 위법행위에 대해 더이상 묵과하지 않고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통해 처벌하여, 구례공종중의 화목을 지켜나간다.

총회는 위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진행을 '원/형/이/정' 각계를 대표하는 임원진으로 구성된 '종중이사회'에 위임한다.

## 제 7 호안. 부회장 선출 (공석인 원희공계만 진행)

현재 부회장이 공석인 원희공계는 종중규약 제 19 조, 제 20 조 및 제 34 조에 따른 적격의 부회장을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